

기획특집

변화하는 가족 돌봄의 양상과 지원 방안

- **경계 위의 돌봄, 경계 밖의 돌봄**
: 이주민가족 자녀 돌봄의 현실과 과제
최윤정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조부모 돌봄의 문제와 아동 돌봄정책 과제**
마경희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정신적 장애인 가족의 돌봄 경험과 지원 방안**
정가원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경계 위의 돌봄, 경계 밖의 돌봄 : 이주민가족¹⁾ 자녀 돌봄의 현실과 과제²⁾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최윤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 혼자 살지 않는 이주민 : 가족 단위 체류의 증가

한국 사회에서 이주민은 오랫동안 ‘혼자 와서 일하다 돌아가는 사람’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주민 정책 역시 개인의 입국과 취업, 체류와 출국을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왔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이주민은 더 이상 혼자 일하러 왔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떠나는 존재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배우자와 자녀를 동반해 입국하거나, 먼저 정착한 뒤 본국에 남아 있던 가족을 불러들이고, 한국에서 자녀를 낳아 기르는 이주민이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시장, 지역 인구구조, 고등교육, 연구개발, 재외동포 정책 등 다양한 영역에서 외국인의 유

입이 증가하면서 이들의 체류는 개인 단위에서 가족 단위로 확장되고 있다.

장기체류 외국인의 가족 단위 이주는 실증적으로 적지 않게 나타난다. 2024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를 재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장기체류외국인의 54.0%가 가족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고, 이들 중 80.0%가 가족과 동거 중이다³⁾. 또한 자녀가 있는 외국인의 51.3%가 자녀도 한국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된다⁴⁾. 이러한 현실은 이주민이 더 이상 ‘개인’으로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 준다.

실제 주 이민자(principal migrant)의 동반 자격으로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규모 또한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2025년 기준 F-3(동반) 체류자격 규

1) 이주민가족은 말 그대로 이주민과 그의 가족을 포괄하는 개념이나, 본고에서는 다문화가족을 제외한 이주민가족으로 한정한다. 현행법상 다문화가족은 한국 국적자를 포함한 이주민가족에 한정되므로 외국 국적자로 이루어진 이주민가족은 현행 가족정책의 지원 대상에서 비껴나 있다. 본고는 이러한 사각지대에 위치한 이주민가족의 자녀 돌봄에 대해 다룬다.

2) 본고는 「최윤정·김이선·장윤선·김수진·장주영(2025). 이주민가족 현황 및 정책 대응 방안 연구」를 자녀 돌봄 관점에서 발췌 및 재구성한 것임.

3) 통계청, 2024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원자료 분석; 최윤정 외(2025). p.104. 재인용

4) 통계청, 2024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원자료 분석; 최윤정 외(2025). p.120. 재인용

모는 75,684명이며, 이는 전년 대비 43.8% 증가하였다. 심지어 2024년에는 전년 대비 72.0%가 증가하여 최근 급속한 증가세가 보임을 알 수 있다⁵⁾. 우리나라 결혼이민자의 규모가 2025년 기준 154,903명임을 감안할 때⁶⁾, 동반 비자 체류자(75,684명)의 규모가 결혼이민자의 거의 절반 수준이라는 것 또한 알 수 있다.

중요한 점은 가족 단위 거주가 증가하면서 이들의 자녀세대 즉, 미성년 외국인의 증가세가 눈에 띄게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이다. 2024년 기준 19세 이하 외국인주민은 14만 4천 명으로 전년 대비 11.9% 증가하였다⁷⁾. 전체 외국인주민의 증가 비율이 5.0%임을 고려할 때, 미성년 자녀의 증가 속도가 두 배 이상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에서 태어난 외국인주민 자녀가 29만 5,304명임을 고려하면⁸⁾, 한국에서 생활하고 성장하는 이주민 자녀가 더 이상 일부 지역이나 특정 가족 유형에 한정된 소수 집단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학교 현장에서의 변화는 이러한 추이를 더욱 분명하게 보여준다. 교육부의 이주배경학생 통계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이주배경학생은 전체 20만 2,208명으로 전체 학생의 4.0%를 차지한다⁹⁾. 이 가운데 부모가 모두 외국 국적자인 외국인가정 자녀는 5만 2,876명으로 2020년 2만 4,453명과 비교하면 불과 5년 만에 두 배를 넘어섰다.¹⁰⁾ 전년대비 증가율 또한 2025년 12.5%, 2024년 16.4%, 2023년 23.5%로 최근 증가율이 매우 가파르게 나타난다¹¹⁾.

이주민가족의 증가는 단순히 동반가족의 숫자가 늘어나는 현상이 아니다. 여기에는 이들 자녀의 증가가 내포되어 있으며, 이주민 자녀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이들의 양육과 돌봄 이슈를 동반할 수밖에 없다. 그동안 이주민 정책에서 돌봄은 대체로 부차적인 문제로 취급되었다. 그러나 실제 가족 단위로 살아가는 이주민에게 자녀 돌봄은 가장 현실적이고 시급한 문제이다. 특히 이주민가족의 사회적 특수성, 제도의 구축을 고려할 때, 보육, 교육, 언어, 부모의 노동, 체류자격, 사회보장 등 이주민가족의 돌봄 이슈는 일반 가족들과 달리 매우 복합적인 요인들에 따라 좌우되며, 그 과정에서 다양한 돌봄 양상이 전개될 수밖에 없다. 이에 본고에서는 이주민가족의 자녀 돌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그에 따라 전개되는 이주민 자녀 돌봄의 다양한 방식,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문제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2. 이주민가족의 돌봄, 그 겹겹의 조건과 상이한 풍경들

이주민가족의 자녀 돌봄은 가족마다 서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어떤 가족은 동반 배우자가 집에서 자녀를 전담하기도 하고, 어떤 가족은 부모 모두 취업이나 학업 상태로 자녀 돌봄을 전적으로 외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도 하다. 이에 어떤 가족은 조부모 등 본국의 가족에게 자녀를 맡기기도 하는

5) 법무부(각연도). 등록외국인 거소신고동포 현황. 12월 말 기준

6) 법무부(2025). 출입국외국인 통계연보.

7) 행정안전부. 2024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8) 상동

9) 다문화교육포털 <https://www.edu4mc.or.kr/guide/typeStat.html>. 일부 재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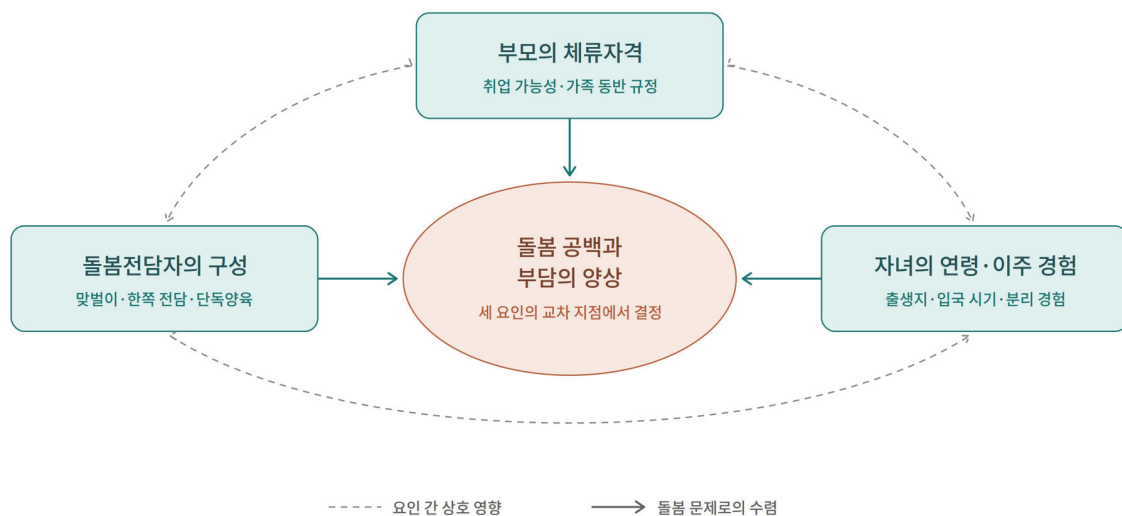
10) 상동

11) 상동

반면, 어떤 가족은 돌봄 부재를 고려하여 처음부터 자녀를 동반하지 않기도 한다.

이러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핵심 요인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부모의 체류자격이다. 부모가 각각 독립적으로 취업·학업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지는지, 한쪽이 다른 배우자에게 동반된 지위인지에 따라 가족 내 생계와 돌봄의 분담이 달라진다. 부모의 체류자격은 본국의 조부모를 한국으로 초청할 수 있는지에도 영향을 미친다. 둘째는 가족 내 돌봄 전담자의 유무이다. 부모 중 한 사람이 자녀를 전담해 돌보는지, 부모 모두 취업·학업 중인지, 조부모 등 제3의 돌봄자가 있는지에 따라 일상적인 돌봄의 안정성과 공백이 달라진다. 셋째는 자녀의 연령과 이

주 경험이다. 한국에서 태어나거나 영유아기에 입국한 자녀와 본국에서 성장하다 학령기에 입국한 자녀는 필요한 돌봄의 내용과 강도가 다르다. 이상의 세 요인은 서로 독립적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부모의 체류자격은 취업 가능성과 가족동반, 조부모 초청 가능성을 규정하고, 이는 다시 가족 안에 돌봄 전담자가 있는지를 결정한다. 여기에 자녀의 연령과 이주 경험에 따라 보호와 교육, 언어와 학습, 정서와 관계 회복 등 필요한 돌봄의 내용이 달라진다. 결국 이주민가족의 자녀 돌봄은 부모의 제도적 지위, 가족이 동원할 수 있는 돌봄자원, 자녀가 경험한 이주의 과정이 결합해 만들어지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림 1] 이주민가족 자녀 돌봄의 영향요인

가. 부모의 체류자격 생계와 돌봄 분담의 결정 요인

한국의 체류제도는 체류자격에 따라 가족동반의 가능 여부를 결정한다. 비전문취업이나 선원취업, 계절근로 등 일부 취업 자격은 배우자와 자녀의 동

반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반면 전문인력이나 유학생 등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동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때 동반가족에게 부여되는 체류자격은 원칙적으로 취업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가족 내부의 돌봄은 크게 두 가지 경로로 나뉜다. 먼저 부모가 각각 취업이나 학업이 가능한 주 체류자격을 가진 경우다. 이 경우 부모 모두 경제활동이나 학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 가족의 소득과 배우자의 사회참여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그러나 부모 모두 외부활동을 하면 가정에서 자녀를 전담해 돌볼 사람이 없어 시간 빈곤과 돌봄 공백이 발생하기 쉽다. 자녀가 어릴수록 어린 이집이나 유치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야간·주말 근무나 자녀의 질병과 같은 비상 상황에서는 즉각적인 대안을 찾기 어렵다.

또 다른 경우는 한쪽 부모가 주 체류자격을 가지고 다른 한쪽이 동반 체류자격을 가진 경우다. 이때 주체류자는 취업이나 학업을 담당하고, 취업이 제한된 동반 배우자는 자연히 가사와 자녀 돌봄을 전담하게 된다. 겉으로 보면 한 사람이 일하고 다른 한 사람이 아이를 돌보는 외별이 가족의 역할 분담과 비슷해 보인다. 그러나 이는 부부가 선호에 따라 선택한 역할 분담이라기보다 체류자격과 취업 제한의 영향을 받아 외부 요인으로 인해 형성된 구조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부모가 각각 독립적인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은 한, 동반 배우자는 사실상 돌봄 전담자의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

부모의 체류자격은 조부모 등 본국 친족을 한국으로 초청할 수 있는지에도 영향을 미친다. 체류자격에 따라 부모 초청의 가능 여부와 소득·자녀 연령 등의 요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일부 가족은 본국의 부모를 초청해 자녀 돌봄을 맡기지만, 이러한 선택이 모든 가족에게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부모 초청이 어렵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가족은 보육기관에 전적으로 의존하거나, 자녀를 본국의 조부모에게 맡긴 채 장기간 떨어져 살기도 한다. 따라서 조부모

돌봄은 단순히 가족이 선택할 수 있는 사적 자원이 아니라 부모의 체류자격에 의해 이용 가능성이 달라지는 돌봄자원으로 봐야 한다.

나. 돌봄 전담자가 있는 이주민가족

: 돌봄의 안정과 고립의 역설

가족 내 돌봄 전담자의 유무는 일상적인 돌봄 공백을 가르는 가장 직접적인 요인이다. 동반 배우자가 가정에서 자녀를 전담해 돌보는 경우 부모 모두 취업이나 학업에 매여 있는 가족에 비해 돌봄 공백은 상대적으로 적다. 어린 자녀를 집에서 보호하고, 자녀가 아프거나 어린이집이 쉬는 날에도 돌볼 사람이 가족 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돌봄 전담자가 존재한다고 해서 자녀 돌봄 문제를 돌봄 전담자가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는 돌봄 전담을 맡고 있는 부모의 한국 내 적응 역량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자녀 돌봄은 가구 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먹고, 자는 등의 기본 생활 배경이 가구 내인 것은 사실이지만, 자녀의 생활은 돌봄기관이나 학교, 학원 등 외부 한국사회와도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돌봄 전담자가 가구 밖에서 벌어지는 자녀의 다양한 이슈를 해결할 수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한국사회 적응도가 높아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한국에서 오래 거주하면서 학업이나 취업을 이어가다가 돌봄 전담자가 된 경우에는 문제해결능력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한국생활 경험이 없이 동반 배우자 자격으로 입국한 돌봄 전담자의 경우에는 매우 취약하다. 동반 배우자의 경우, 자녀 돌봄 및 가사활동으로 한국어교육이나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쉽지 않고, 취업 제한으로 인해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도 주어지지 않아 사실상 지역사회 내 관계 형성 기회가 제한된다. 한국 사회 적응 역량을 제고할 기회가 제한되다 보니, 사실상 이들의 돌봄 역량은 가구 내로 제한되는 것이 현실이다.

문제는 이로 인해 자녀 돌봄도 한 사람에게 완전히 전담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돌봄 전담자가 있음에도 결과적으로는 한국사회 내 문제해결능력이 좀 더 높은 주체류자에게 돌봄 부담이 상당 부분 전가되는 역설이 생기는 것이다. 동반 배우자의 한국어 미숙 때문에 주체류자가 자녀의 학교 담임교사 상담, 가정통신문 해석 및 준비물 챙기기, 방과후학교나 학원의 선택과 신청 등의 돌봄활동을 전담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최윤정 외, 2025:174). 표면상으로는 돌봄 전담자가 가족 내 존재하지만, 부모 모두에게 돌봄 부담이 걸쳐지는, 사실상 돌봄의 분업이 발생하게 된다. 동반 배우자는 하루 종일 자녀를 돌보면서도 자녀의 교육과 의료에 관한 정보와 주요 의사결정에서는 주체류자에게 의존하게 되고, 주 체류자격자는 생계를 책임지는 동시에 가족이 한국 사회의 제도와 관계를 맺는 데 필요한 대외적인 돌봄까지 감당한다. 한쪽은 돌봄 속에서 사회적·경제적으로 고립되고, 다른 한쪽은 생계와 가족의 제도적 돌봄을 함께 떠안는 역설이 발생하는 것이다.

다. 돌봄 전담자가 없는 이주민가족

: 시간 빈곤과 돌봄 자원의 부재

부모가 각각 취업이나 학업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동반 배우자가 체류자격을 변경해 일을 시작한 경우에는 부모 모두 경제활동이나 학업에 참여하게 된다. 앞서 살펴본 돌봄 전담자가 있는 가족과 달리, 맞벌이 가족은 경제적 어려움과 동반

배우자의 사회적 고립을 완화한다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부모 모두가 취업이나 학업을 전담하면서 사실상 돌봄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어린 이집이나 유치원, 학교와 방과후 돌봄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보육기관의 운영시간과 부모의 노동시간이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취업비자를 가진 부모의 경우, 교대 근무와 잔업, 주말근무가 잦고, 이로 인해 저녁시간이나 주말에 돌봄 공백이 발생한다. 유학생 역시 수업과 연구, 아르바이트 시간이 정규 보육시간과 맞지 않을 수 있다. 특히 자녀를 동반한 유학생들은 대부분 박사학위급 대학원생이 많고, 이공계 전공자의 경우라면 실험실(lab) 생활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자녀가 갑자기 아프거나 어린이집과 학교가 쉬는 날에는 부모 중 한 사람이 일이나 수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돌봄 자원의 측면에서 이주민가족이 일반 국민의 가족들과 가장 상이한 점은 가족 관계망의 부재이다. 일반적으로 조부모 등 또 다른 가족은 자녀 돌봄의 중요한 자원이 되며, 특히 긴급 상황에서는 상당히 유용한 대안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한 자원이 이주민가족에게는 차단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이주민가족들은 일반 한국 가정들에 비해 사적 돌봄을 동원할 사회적 자본 또한 제한적이다. 단순히 한국에서 ‘아는 사람’이 있는 것과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아는 사람’이 있는 것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에게 돌봄 공백은 ‘선택지 없는 방임’의 또 다른 이름이 된다. 부모가 주말에도 일해야 하지만 자녀를 맡길 곳이 없어 초등학생 자녀들만 집에 남겨둔다거나, 자녀가 아프면 수업에 참석하지 못하고 아이를 돌봐야만 하는 여성 유학생들의 사례는 우연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한부모가족이나 사실상 한 사람이 생계와 돌봄을 모두 담당하는 가족에서 더욱 심각해진다. 최윤정 외(2025:110)에 따르면, 외국인 동거가족 가운데 자녀와만 동거하는 가족은 12.4%로 적지 않고, 특히 여성이 자녀와만 거주하는 비율이 19.3%로 남성의 5.3%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이들 가족은 돌봄 전담자의 부재를 넘어 독박육아와 독박노동이 충돌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거기에서 이주민가족의 취약한 사회적 자본은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순간마다 일이나 학업을 미루거나 포기하게 하는 결과를 만들고 있다.

라. 국경을 오가는 친족 돌봄

: 조부모 초청과 자녀 귀환의 선택

부모만으로 자녀 돌봄을 감당하기 어려운 이주민 가족이 가장 먼저 찾을 수 있는 대안은 본국의 부모나 친척을 초청하는 것이다. 본국의 조부모를 한국으로 초청할 수 있는 가족에게 조부모는 중요한 돌봄자원이 된다. 부모가 모두 취업하거나 공부하는 동안 자녀의 등하원과 식사, 방과후 시간을 맡을 수 있고, 야간근무나 자녀의 질병과 같은 비상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다. 이들에게 조부모의 도움은 단순한 편의를 넘어 부모의 취업과 학업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조건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부모 초청은 체류자격이나 경제적 여건에 따라 상당히 제한적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조)부모 초청이 가능한 체류자격은 D-2(유학), E-1(교수), E-2(회화지도), E-3(연구),

E-4(기술지도), E-5(전문직업), E-6(예술행), E-7(특정활동), F-4(재외동포), F-6(결혼이민)에 한정된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5.11.; 최윤정 외, 2025:67-69 재인용). 이 중에서 D-2(유학), F-4(재외동포), F-6(결혼이민)을 제외한 나머지 경우는 연간소득이 GNI 2배 이상¹²⁾으로 한정되어 있어 최소 연봉 1억 원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기는 쉽지 않다¹³⁾. F-6(결혼이민)의 경우에는 자녀 연령(만9세, 한부모가족의 경우 만 12세) 제한이 있거나, 중증질환이나 중증장애가 있는 경우 등으로 제한되기도 한다.

여러 조건을 충족해서 초청이 허용되더라도 항공료, 주거비, 생활비 등 부모 동거로 인한 체류비용 또한 해당 가족의 부담이다. 조부모가 한국에서 함께 살더라도 가족의 돌봄 부담이 완전히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이들 역시 한국어와 한국의 교육·의료 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문제는 동일하기 때문에 어린이집과 학교, 방과후학교나 학원, 병원 등과의 소통은 여전히 부모가 담당해야 한다. 조부모가 자녀의 일상적인 돌봄을 맡더라도 가정 외의 돌봄 이슈는 모두 부모의 몫인 것이다.

부모 초청이 불가하거나, 한국에서 자녀를 양육할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에는 반대로 자녀를 본국으로 보내는 초국가적 돌봄을 선택하기도 한다. 이때 부모는 송금과 전화, 영상통화를 통해 경제적·정서적으로 양육에 참여하고, 조부모나 친척은 자녀의 일상적인 생활과 보호를 담당한다. 돌봄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부모의 생계부양은 한국에서, 자녀의 생활 돌봄은 본국에서 이루어지는 국가를 넘나드는

12) 2025년 기준 한국의 GNI(1인당 명목 국민총소득)는 3만 6,963달러(원화 약 5,257만 원)임. (출처: 국가데이터처, 지표누리.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8086>)

13) 단, 국내 학사학위 졸업자가 E계열 체류자격으로 전환한 경우에 대해서는 GNI로 완화 적용됨.

는 돌봄의 분업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선택은 한국에서 보육비를 감당하기 어렵거나, 부모가 모두 취업·학업 중이어서 자녀를 돌볼 사람이 없을 때 나타난다.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모든 자녀의 보육료를 부담하지 못해 일부 자녀만 한국에서 함께 살고 다른 자녀는 본국으로 보내기도 한다.

이 경우는 부모와 자녀의 장기 분리가 일어나는 문제도 동반된다. 분리기간 동안 부모는 자녀의 일상적인 성장과정에 직접 참여하기 어렵고, 자녀는 조부모나 친척을 주된 양육자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문제상황은 주로 재결합 이후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밀착적인 돌봄 지원을 필요로 하는 연령이 지나면, 부모들은 자녀를 한국으로 초청하게 되는데, 자녀 입장에서 새로운 언어와 학교, 생활환경에 적응 자체만으로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 및 관계 형성도 추가적인 어려움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가족 분리 후 입국한 자녀들의 경우에는 중도입국으로 인한 한국 적응의 어려움이 훨씬 가중된다고 볼 수 있다.

마. 자녀의 이주배경과 성장단계

: 달라지는 돌봄 요구

부모의 체류자격과 돌봄 전담자의 유무가 가족이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조건을 결정한다면, 자녀의 이주 여부와 한국 성장 배경은 어떤 돌봄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결정한다. 자녀가 한국에서 태어났는지, 어린 나이에 부모와 함께 입국했는지, 본국의 조부모나 친척에게 양육되다가 학령기에 입국했는지에 따라서 필요한 돌봄의 내용이 달라진다.

한국 출생 또는 영유아기에 입국한 자녀는 적응에 가장 유리한 상황이다. 다만, 이 또한 이들이 어

린 연령에서부터 한국의 돌봄기관과 교육기관을 이용했다는 전제하에서이다. 한국에서 어린이집부터 이용한 자녀들의 경우 한국어 습득이 빠르고, 이는 또래관계 형성에도 이점이 있다. 반면, 한국에서 태어났더라도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지 못하면, 학교 입학 후 한국어와 또래관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특히 이주민가족의 특성상 가정 내 사용언어가 모국어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학령기에 들어서야 한국어에 노출이 된다면, 상대적으로 한국어 역량 습득에 어려움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학령기에 한국으로 들어온 중도입국 자녀는 더 복합적인 돌봄을 필요로 한다. 이들은 일상적인 한국어뿐 아니라 교과학습에 필요한 언어를 새로 익혀야 하고, 본국에서 경험한 교육과정과 다른 한국의 학교문화에도 적응해야 한다. 친구를 사귀지 못하는 등 또래관계에서 차별과 배제를 경험하면 심리적 불안이 커질 수 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언어지연이 심화되기 때문에 적응의 문제는 더 가중되게 된다. 또한 부모와 오랫동안 떨어져 살다가 한국에서 재결합한 경우에는 관계적·정서적 돌봄도 필요하다. 따라서 부모의 가정 내 돌봄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령이 높아질수록 교육기관이나 전문적인 지원이 더욱 필요하게 된다.

3. 제도 밖의 돌봄

: 보육기관 이용의 사각지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부모의 체류자격과 돌봄 전담자의 유무, 자녀의 연령과 이주 경험에 따라 이주민가족의 돌봄 방식과 어려움은 다르게 나타나지만, 서로 다른 이주 경로와 배경을 가진 이주민가족의

돌봄 문제는 결국 한 지점으로 모인다. 가족 내부의 자원만으로 자녀 돌봄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주민가족은 가까운 곳에서 도움을 요청할 조부모나 친척, 충분한 사회적 관계망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의 돌봄을 대신하거나 보완해 줄 가족 밖의 돌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물론 가족 밖의 돌봄은 자녀의 성장단계별로 다각도의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외국인 아동이 학교와 영유아 보육·유아교육기관에 접근하는 조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학령기에 이른 외국인 아동은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28조에 따라 국적과 관계없이 공교육체계 안에서 교육받을 수 있고, 학교에 입학한 아동에게 국적을 이유로 별도의 교육비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러나 초등교육 이전의 학령전교육(누리과정)이나 돌봄의 경우에는 「사회보장기본법」 제1조와 제8조에 따라 국민이 아닌 자를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다. 다시 말해 이들 아동의 영유아 보육 및 유아교육은 원칙적으로 부모의 사적 부담으로만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2025년 기준 우리나라의 1인당 아동 보육비는 연령에 따라 28만 원에서 56만 7천 원으로 설계되어 있다(교육부, 2025:293).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만큼 지불비용이 배가된다. 여기에 차량비, 각종 활동비 등 부수 비용을 포함하면 실질적으로 가계경제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된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외국인 아동의 보육료나 유아학비를 자체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지원 방법과 지원 기준은 지역마다 매우 상이하다. 어떤 지역은 비율로, 어떤 지역은 금액으로 제시하기도 하며, 그마저도 연령별 지원금에 차등을 두기도 한다. 가령, 2025년 기준 서울시의 경우에는 기본보육료의 50%를 지원하지

만, 전남은 일괄 1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인천시는 3~5세에 대해서만 20만 원을 지급하였다(최윤정 외, 2025:250-251). 또한 광역 단체와 기초 단체 간에도 지원 기준이 자유롭다 보니, 두 곳에서 모두 지원을 받는 경우는 같은 광역 지자체 내에서 지원금의 격차가 발생하게 된다. 가령, 경기도의 경우 월 15만 원을 지원하는데, 시흥시의 경우에는 여기에 20~25만 원을 추가 지원하기도 하고, 광명시나 화성시는 나머지 전액을 모두 지원한다(최윤정 외, 2025:250). 기초 단체의 추가 지원이 없는 지역들은 15만 원이 전부인 것과 비교하여 지역별 격차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동일한 F-2-R 비자를 소지하였음에도 거주지역에 따라 한 가족은 전액 지원을 받는 반면, 다른 가족은 4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확인되기도 한다(최윤정 외, 2025:188-189). 국가의 무상보육과 유아교육 지원에서 발생한 공백을 지방자치단체의 선택적인 사업이 메우면서, 국적에 따른 차이가 다시 지역에 따른 격차로 이어지는 것이다.

보육·유아교육기관 이용은 부모가 일하는 동안 자녀를 맡기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돌봄 전담자에게는 가족 내부에 집중된 돌봄을 분산하고 한국어 학습과 취업, 사회활동을 준비할 수 있게 하는 여건을 만들어 준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자녀에게는 영유아 돌봄이 한국어를 습득하고, 가정 밖에서 또래관계를 접하면서 이후의 학교생활을 준비하는 첫 번째 사회적 공간이라는 점이다. 발달단계에는 결정적 시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자녀의 한국어 노출 시기가 지연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언어 습득, 또래관계 형성, 학습 기초 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인적자본 투자의 수익률은 연령이 낮을수록 높고, 성인기로 갈수록 급격히 낮아진다는 점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Heckman, 2006). 이는 지원이 늦을수록 격차가 누적되고 회복 비용은 커지게 됨을 의미한다.

이주배경 아동의 상당수는 한국에서 성장해 한국 사회에서 살아갈 가능성이 높다. 돌봄·교육에서 배제된 채 성장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들은 학업 이행이나, 청년기 이행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고, 결국 그 비용은 우리 사회가 치르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외국 국적 아동의 보육료와 유아학비 문제는 단순한 비용 지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주민 가족의 사회통합과 자녀의 성장, 국가적 인적자원의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하며, 시혜적 관점이 아닌, 투자와 인권적 관점에서 개입될 필요가 있다.

4. 이주민가족의 돌봄, 정책으로의 초대

이주민가족의 자녀 돌봄은 부모가 한국에서 일하고 공부하며 생활하는 동안 자녀가 안전하게 돌봄을 받고 성장하며,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통합을 위한 기본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유엔 아동권리협약」 비준국으로 모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주민가족의 자녀 돌봄 문제는 개별 가족의 양육 역량이나 적응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체류자격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조건들과 가족의 여건, 제도의 이용 여부 등이 다양하게 맞물리면서 이주민 자녀의 돌봄 사각지대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가. 이주민가족의 돌봄 문제가 여러 제도의 교차 지점에서 발생하는 만큼, 개선 방안 역시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가. 외국인 아동 보육 지원의 국가 기준 마련 검토

가장 우선적인 과제는 외국 국적 아동의 보육료 지원을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선택에만 맡기지 않는 것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지만, 지원 여부와 대상 연령, 지원 금액이 지역마다 다르다는 것은 앞서 언급한 바 있다. 문제는 국가 지원에서 발생한 공백을 지방자치단체의 개별 사업이 보완하면서 국적에 따른 차이가 다시 지역에 따른 차이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외국인 아동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국가의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부모나 아동의 국적만을 기준으로 포함 또는 배제하기보다, 아동의 국내 체류기간과 등록 여부, 부모의 취업·학업, 가구의 경제적 여건과 실제 돌봄 필요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어린이집 보육료와 유치원 유아학비가 서로 다른 체계에서 지원되고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 국적 아동만 지원하거나 지방자치단체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지원 여부를 달리하면, 부모가 자녀의 필요보다 지원 가능성에 따라 기관을 선택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영유아가 어느 기관을 이용하든 과도한 비용 때문에 돌봄·유아교육체계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보육료와 유아학비의 지원 원칙을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다. 현재 「영유아보육법」이나 「유아교육법」을 개정하여 외국인 아동에 대한 보육지원 조항을 신설하는 방법을 고민하거나, 의무교육의 범위를 누리과정까지 확대하여 사회서비스가 아닌, 교육 지원 차원으로 접근하는 방안도 고려 가능하다. 그 외 가족의 유형에 따라 동반 배우자가 자녀 돌봄을 전담하는 경우에는 가족센터 등을 통해 자녀 돌봄과

동반 배우자의 한국어교육, 사회통합교육, 지역사회 활동 등을 연계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나. 이주민가족 대상 서비스 전달체계 마련

이주민가족 지원에 있어서는 사실상 전국 244개에 설치되어 있는 가족센터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가족센터는 오랫동안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면서 가족관계, 부모교육, 통번역, 자녀 성장지원 등 이주배경가족에 대한 지원 경험이 20년 가까이 축적되어 있다. 2024년부터 가족센터는 외국인가족과 난민가족을 회원 범위에 포함하고, 외국인가정 자녀에게 기초학습과 진로설계 등 일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이주배경가족 정착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비(非)다문화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사례관리, 사회적응지원, 지역특화 서비스 등을 시작하였다(성평등가족부, 2025.11.). 이는 중요한 변화지만, 시범사업 기관이 4곳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향후 확대가 필요해 보인다.

다만 가족센터의 역력이 이주민가족까지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지는 현재로서는 충분치 않다는 것이 현실적 진단이다. 가족센터로의 통합으로 지역 내 가족 사업을 포괄하게 된 상황에서 기존의 다문화가족 지원만으로도 벅찬 것이 기관의 현실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주민가족의 지원을 위해서는 가족센터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도 사실이다. 사실상 인구감소지역 등에서는 이들 기관이 유일한 이주민 서비스 기관인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가족센터가 지자체 매칭펀드 구조로 운영되어 지자체의 자체적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도 지역별 특화사업을 추진하는 데 유리한 부분이다. 거기에 가족 및 자녀 돌봄을 통해 선주민과의 접점

을 제공한다는 점도 의미 있는 지점이다. 따라서 이주민가족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위해 가족센터를 활용하고자 한다면, 인력과 예산을 확대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다. 가족정책의 대상으로서의 이주민가족

이러한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주민가족을 지원할 제도적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 현재 가족정책에서 이주민가족 지원은 여전히 한국국민과 결혼이민자·귀화자로 이루어진 다문화가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모와 자녀가 모두 외국 국적자인 가족은 한국에서 장기간 생활하며 자녀를 양육하더라도 가족정책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대상과 내용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다양한 이주민가족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 외국인가족의 아동·청소년의 보육과 성장지원, 부모교육과 가족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미 김남희 의원(2026.3.25.)과 전진숙 의원(2026.5.8.)이 이와 관련한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며, 이러한 시도가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부모의 국적과 가족의 결합 형태가 아니라 국내에서 자녀를 양육하며 생활하는 가족의 실제 필요를 기준으로 가족정책의 범위를 넓혀나갈 필요가 있겠다.

이주민가족은 이미 한국 사회에서 일하고 공부하며 자녀를 키우는 사회구성원이다. 그러나 이들의 자녀 돌봄은 체류자격과 국적, 거주지역에 따라 개별 가족이 감당해야 할 사적인 책임으로만 남겨져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정책의 목표는 이들 가족에게 돌봄을 전달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족 안에 집중

된 돌봄을 보육·유아교육기관과 가족센터, 지역사회가 함께 나누도록 하는 데 있어야 한다. 한국 사회가 이주민가족의 장기적인 정착과 통합을 기대한다면, 그 가족이 자녀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조건부터 마련해야 한다.

가족 단위 이주를 받아들이는 이민정책에 조응하여, 가족이 실제로 함께 살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돌봄정책 또한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 교육부(2025). 2025년 하반기 보육사업 안내.
- 김남희 의원 외(2026.3.25.).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7757.
- 다문화교육포털 <https://www.edu4mc.or.kr/guide/typeStat.html>. 일부 재분석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25.11.). 외국인 체류 안내 매뉴얼.
- 법무부(2025). 출입국외국인 통계연보.
- 법무부(각연도). 등록외국인 거소신고동포 현황. 12월 말 기준
- 성평등가족부(2025.11.). 이주배경가족 정착지원사업 시범운영 계획
- 전진숙 의원 외(2026.5.8.).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8898.
- 최윤정·김이선·장윤선·김수진·장주영(2025). 이주민가족 현황 및 정책 대응 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통계청. 2024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원자료 분석.
- 행정안전부. 2024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 Heckman, J. J. (2006). Skill formation and the economics of investing in disadvantaged children. Science, 312(5782), 1900–1902.